

제 13 장 전자상거래

제 13.1 조 적용 범위

1. 양 당사국은 전자적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무역이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9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0장(금융서비스), 제11장(통신) 및 제14장(정부조달)을 포함한 이 협정의 규정을 조건으로 함을 확인한다. 특히, 양 당사국은 전자적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무역을 가능하게 하는데 있어서 제11.2조(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또한, 다른 장에서의 당사국의 약속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이 장이 디지털 제품이 전자적으로 전달되도록 허용할 의무를 그 당사국에게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제 13.2 조 일반규정

1.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기회,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규칙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한다.
2. 사회 및 경제발전의 도구로서 전자상거래의 잠재력을 고려하면서, 양 당사국은 다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 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촉진하는데 있어서 양 당사국의 국내 규제 틀의 명확성,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 나. 이용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산업 지침, 모델 계약 및 행동규약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에서의 신뢰와 신용을 촉진하도록 민간 부문에 의한 자율 규제를 장려하는 것
 - 다. 상호운용성, 혁신 및 경쟁을 통하여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것
 - 라. 국제 및 국내 전자상거래 정책이 기업, 소비자, 비정부기구 및 관련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보장하는 것, 그리고

마. 중소기업 및 개발도상국의 전자상거래 이용을 촉진하는 것

3. 각 당사국은 전자 환경과 관련된 사안을 처리함으로써 전자적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무역을 촉진하는 조치를 채택하도록 노력한다.

4. 양 당사국은 전자적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회피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국가의 정책 목표를 고려하면서, 양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금지하도록 노력한다.

가. 전자적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무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조치, 또는

나. 다른 수단에 의하여 수행되는 무역보다 전자적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무역을 더 제한적으로 대우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

제 13.3 조

관세

1.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관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당사국이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하여 내국세 또는 그 밖의 국내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세 또는 부과금은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제 13.4 조

개인정보 보호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개인 정보 보호 기준의 개발에 있어,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 기준을 고려한다.

제 13.5 조

종이 없는 무역 행정

1.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가능 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 형식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 13.6 조 소비자 보호

1. 양 당사국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때에 소비자를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유지하고 채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에 참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경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제 13.7 조 협력

전자상거래의 전지구적인 성격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다음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 가. 중소기업에 의한 전자상거래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
- 나. 데이터 프라이버시, 소비자 신뢰, 전자통신 안보, 전자인증, 지식재산권 및 전자정부에 관련된 것들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 규정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
- 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활발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서 정보의 국경 간 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 라. 민간 부문이 행동 강령, 모델 계약, 지침 및 집행 메커니즘을 채택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것, 그리고
- 마.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및 다자간 포럼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

제 13.8 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또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다른 장이 우선한다.

제 13.9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전자적으로 전달된이란 통신 단독의,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 기술과 연계된 통신을 통한 전달을 말한다.

디지털 제품이란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된 컴퓨터 프로그램·문자열·동영상·이미지·녹음물 또는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

개인정보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통신이란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

무역행정문서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 그리고

전자적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무역이란 통신 단독의,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 기술과 연계된 통신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무역을 말한다.